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18.4.18., 개정 2019.10.31.>

## 상담기록관리부

(제29조 제1항 및 제35조 제4항 관련)

|            |                |      |                         |
|------------|----------------|------|-------------------------|
| 상담일시       | 2020.12.29.(화) | 상담유형 | [ ] 방문 [√] 전화 [ ] 기타( ) |
| 상 담<br>요청자 | 성명 김           | 생년월일 |                         |
|            | 소속/직위(직급)      | 연락처  | 064                     |

### 상담 내용

1. 면접 및 제안서 평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문의
2. 외부강의등 관련 복무 처리 문의

### 상담 결과

1. 청탁금지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의견을 전달·교환하는 회의형태가 아닌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서 제외

#### 2)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

-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임
-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외부강의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회의 형태가 아닌 외부강의등은 제10조의 규율대상에서 제외

국민권익위원회 발간 <2020 청탁금지법 해설집>

2. 외부강의등에 출강하는 경우에는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의3(외부강의등 관련 복무관리) 조항 적용 가능. 해당 건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장 관련 별도 규정의 검토가 필요함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의3 (외부강의등 관련 복무관리)  
외부강의등이 직무수행(업무분장 등에 명시되거나 부서장이 업무 책임자라고 판단하는 경우)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출장처리 하고, 이외의 사적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4.>

2020 년 12월 29일

행동강령책임관

김용덕

